

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August 6, 2021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기업이나 경영인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위주로 하여, 그 내용을 I. 제도 신설 사항, II. 제도 개선 사항, III. 일몰 도래 사항의 종료·연장 등 여부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본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공포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관련 내용은 2021. 8. 4.자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고, 관세 관련 뉴스레터는 별도로 발송하여 드릴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제도 신설

II. 제도 개선

III. '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
연장 현황

I. 제도 신설

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법 § 44, 법인령 § 80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 6④(14))

현 행	개 정 안
☐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신 설>	☐ (좌 동)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개정이유)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 현재 스팩(SPAC)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대상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초래되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팩(SPAC)의 합병상장 방식으로 **현행 존속합병** 방식 이외에 **소멸합병** 방식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작업 진행 중임(2021. 6. 18. 개정 예고)

○ 합병 시 양도차익(합병대가-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가능한바, 스팩 소멸합병의 경우에도 스팩(피합병법인)의 합병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 조치 필요

○ 스팩은 존속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의 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 시 실질적으로 2년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 존재

- 합병 당사자인 내국법인의 1년 이상 사업 계속 의무 면제

- 스펙 합병은 IPO·유상증자와 같이 비상장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며, 스펙의 주주는 IPO·유상증자의 출자자와 유사
 -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지분의 50% 이상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의무 면제
- 스펙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해 스펙의 유일한 사업(상장·합병 추진업무)이 완료되므로 승계 및 지속 필요성 없음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지속 의무 면제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특수관계인간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제한 (법인법 § 50의2 신설, § 1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 (개정이유) 사업양수는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비슷하나 사업 양수법인의 종전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이를 악용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할 필요
 - * 예 :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큰 소득이 발생하는 우량법인을 양수하여 종전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우량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 10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개인목적 등으로 사용·소비 등 <신 설>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좌 동) ○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 보완(참고로, 위탁자 지위 이전은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부가법 § 29④)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적용대상 확대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 보완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 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등) 자료 제출 의무 ○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 (개정이유)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즉,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6.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10· § 24)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지원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3단계) 및 공제율 추가 확대																																							
<신 설> <table><tr><th>R&D 비용(%)</th><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 반</td><td>2</td><td>8</td><td>25</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30</td><td>30~40</td></tr></table>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table><tr><th>R&D 비용(%)</th><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 반</td><td>2</td><td>8</td><td>25</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30</td><td>30~40</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40</td><td>40~50</td></tr></table>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table><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5</td><td>12</td></tr></table>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table><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5</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6</td><td>8</td><td>16</td><td>4</td></tr></table>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개정이유)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현행 2단계 지원구조를 개편하여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개 분야)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 (적용시기) 2021. 7. 1. ~ 2024. 12. 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7.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10, 조특령 § 9·별표7 등)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신 설> ○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한도: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15%)	☐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년 적용] ○ (좌 동)

-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최신·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우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술 정비기반 마련**(R&D 세액공제가 신설된 **2010년 이후 신성장·원천기술**은 **양적으로 지속 확대**)

* (2010년 도입) 91개 → (2019년) 173개 → (2021년) 235개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IP) 추가(조특령 § 21)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당기분기본공제① + 증가분 추가공제 ② ① : 중소 10% / 중견 3% / 대 1% ②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 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장비 등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 <u>중소·중견기업</u>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좌 등) - <u>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등*</u>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자체·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개정이유) 지식재산(IP) 거래시장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과공급 시장으로 수요측 인센티브 필요

* IP 거래시장 공급 8.6만건 > 수요 0.2만건(공급의 2.3%) (2020년 기준, 특허청)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신설(조특법 § 91의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특례) 9%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 (적용기한) 2024. 12. 31.까지 매입분

※ 2021. 5.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정부는 개인이 직접 매입·보유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국민의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

<도입배경>

- 최근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의 안정적 발행이 중요한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의 수요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할 필요
 - * 개인 국채 보유 비중('20년): (韓)0.1%이하 (英)9.9% (싱가폴)5.1% (日)2.4% (美)0.5%
 - *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가 극히 저조(2020년 1억원 이하)
 - 주요국의 경우, 금리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 중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여 안정적 국채발행 여건 조성,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 제공,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활용
- 개정안 국회통과 시 관련 지침(발행 시기 등 규정) 제정 예정(이르면 연말 예상)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 8의4)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 85의2, 법인세법 § 72)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 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하여 직전 2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 (개정이유) 직전연도인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납부세액이 없는 결손기업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결손 중소기업은 2021년 결손금에 대해 현행 제도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 보완 필요

○ (적용시기)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액 환급 신청

II. 제도 개선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 19·19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 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 (좌 동)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 59의4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1천만원 이하</td><td>15%</td></tr><tr><td>1천만원 초과분</td><td>30%</td></tr></table>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율 1년간(221.1.1.~'21.12.31.) 5%p 한시 상향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공제율</th></tr><tr><th>2021년</th><th>2022년~</th></tr><tr><td>1천만원 이하</td><td>20%</td><td>15%</td></tr><tr><td>1천만원 초과분</td><td>35%</td><td>30%</td></tr></table>	구분	공제율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구분	공제율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 (적용시기) 2021. 1. 1. ~ 2021.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3.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 75)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좌 등)

- **(개정이유)** 현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나, 재화 등의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공급시기 착오),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지연 발급)될 수 있으며,
 - 특히 실무상 전년도 1년치 결산조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

< 적용사례 >

◇ **(사례1 : 공급시기 착오)** 2021. 2. 25.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2021.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실제 공급시기가 2020. 6. 25.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현행)** 6개월 이상 착오(발급기한 : 2021. 1. 25.)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 **(개정)** 1년 이내 착오(발급기한 : 2021. 7. 25.)이므로 과세당국의 경정을 통해 공제 가능

◇ **(사례2 :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2020. 6. 25.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2020년 결산조정 과정에서 누락을 발견하고 2021. 2. 25. 세금계산서 발급

- **(현행)** 6개월 이상 지연발급(발급기한 : 2021. 1. 25.)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 **(개정)** 1년 이내 지연발급(발급기한 : 2021. 7. 25.)이므로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75)

현 행	개 정 안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좌 동) -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시 대가수령
없어도 공급시기로 인정, 부가법 § 17③)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좌 동)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 (개정이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 75)

현 행	개 정 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 70①)

현 행	개 정 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확정신고기한까지→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 (상증법 § 4의2⑥· § 47①)

현 행	개 정 안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 합산배제 증여재산 ○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 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추 가>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 (좌 동)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 (좌 동)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개정이유)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 35③)

현 행	개 정 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 설>	☐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좌 동)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개정이유)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 어느 거래의 대가가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시가 범위에 속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에도 상증법에서는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금액 또는 거래일 종가 등*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상증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의 평균액이어서(제63조), 양자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장주식의 시가

구분		시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
증권시장 외 거래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거래일 종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	거래일 종가×120%

- 이를 방지하고자 개인 간 거래의 대가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 41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일 ○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	☐ 증여일 명확화 ○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 신고기한 명확화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 **(개정이유)**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I. '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86개 항목 중 종료 9개, 재설계 23개, 적용기한 연장 54개

*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운동을 위해 '22.1.1.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 연장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료 (9)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한시적 제도의 운영종료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미미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확충계획 미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기관간 형평성 고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과세형평 제고
재설계 (23)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실효성 제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실효성 제고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실효성 제고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생계형 창업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혁신성장 지원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일자리 지원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취약계층 고용 지원
	• 청년 임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소득 청년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복귀기업 지원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 계획)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연장 (54)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 활성화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 활성화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취업 지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 지속 지원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지원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 개선계획)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국가균형발전
	• 영농·영여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지원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자산형성 지원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서민금융 지원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 지원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생·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지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지원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